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2000. 06. 10. 제정
2005. 05. 09.
2017. 09. 19.
2018. 07. 17.
2024. 02. 17.
2024. 10. 21.

제1조 (명칭) 본 위원회는 대한핵의학기술학회(이하 "학회") 회칙 3장 5조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학회 학술지인 「핵의학기술」의 출판 및 학술과 관련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구성)

위 원 장 : 핵의학기술학회 회장이 임명

부위원장 : 핵의학기술학회 편집이사

편집위원 : 15인 이내로 구성

(핵의학 분야에서 연구성과, 학술업적, 편집능력 및 연구윤리성을 갖춘자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 (임기)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3년으로 하며, 위원은 연임 할 수 있다. 결원으로 총원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임무)

위원장 : 편집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 :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편집위원 : 논문 심사 및 평가, 학술상 심사, 학술지의 편집 및 발행 등 「핵의학기술」의 출판 및 학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업무)

본 위원회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 ① 학술지의 기획,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② 학술지의 질적 향상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7조 (회의)

위원회의 정기적인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시

는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 불참 시 위임장을 제출한다. 위원회의 성립은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소집 시에는 심의안을 개최 일주일 전에 통보해야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일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회의록)

회의 사항은 부위원장이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및 의결 사항과 활동은 위원장이 서면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투고규정)

투고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학술상)

학술상의 심사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본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다.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